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, 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고 있으나 보훈의 공이 더 큰 보상금을 받는 자는 공제되지 않음.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도 일정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보훈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정금액 공제 근거 마련 등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나 그 밖의 금품. 다만,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.”를 “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나 그 밖의 금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을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보훈급여금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나 그 밖의 금품. 다만, 다음 각 목의 보훈금

여금은 제외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라목 및 마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
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

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금, 「국가유
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
의4에 따른 보상금,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·19혁명공로수당,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
가~라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
시하는 보훈급여금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소득의 범위) ① 「기초연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를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소득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공적이전소득: 「국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군인 재해보상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나 그 밖의 금품

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나 그 밖의 금품.
다만,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.

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,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
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5. 보훈급여금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

나 그 밖의 금품. 다만, 다음
각 목의 보훈급여금은 제외한
다.

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
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생활
조정수당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
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
른 생활조정수당, 간호수당
및 무공영예수당
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
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
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

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
7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
및 간호수당

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
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
금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2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
4에 따른 보상금, 6·25전몰
군경자녀수당 및 4·19혁명
공로수당, 「보훈보상대상

	<u>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</u> <u>1조에 따른 보상금 중 가~</u> <u>라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</u> <u>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</u> <u>정하여 고시하는 금액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78